『측정대행계약관리』 제도 설명회

2020.11.

목 차

- 1.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안내
- 2. 주요 질의사항
- 3. 21년도 주요 사업일정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안내

1-1. 개 요

도입 목적

배출시설 오염물질의 부실측정 예방 및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도입 경과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19.4)
 - 측정대행 허위, 부실측정 적발 및 관리제도 미비점 개선 요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3.31. 공포, 10.1. 시행)
 - 측정대행 계약관리제도의 근거 마련
- 측정대행제도 이해관계자 권역별(수도권, 대구, 대전) 설명회 (7.22.~28.)
- 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완료 (10.5)
 - 대기, 수질분야 계약검토 및 정보관리시스템(ECOLAB) 운영 등

1-2. 제도 시행 이후 변경사항 안내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절차 흐름도 (7월 설명회 대비 변경사항)



1-3. 추가 안내사항

분야(대기,수질)별 계약관리 관할기관





- 현재, 한국환경공단 단독 수행 (대기, 수질)
- 환경보전협회 계약관리기관 지정 준비 중 (연내 지정 예상)
 - 지정 시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정보관리시스템(ECOLAB)에 게시
- 기관 추가 지정 이후 달라지는 점은?
 -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달라지는 것 없이 현재와 동일(ECOLAB 제출)
 - 다만, 제출된 표준계약서는 관할 기관(대기:공단, 수질:협회)에서 접수 및 승인

주요 질의사항

1. 측정대행계약검토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서류 누락 여부 및 과업내용 등 기본 요건 확인 후 승인[1~2일 소요]
 - 보완 필요 시 사유 기재하여 반려 → 반려사유 보완 후 다시 제출

- 측정대행업체의 수행절차는 준비단계, 제출단계, 실행단계로 구분
 - (준비단계) 표준계약서(안), 과업계획서 마련
 - (제출단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표준계약서(안), 과업계획서 제출
 - (실행단계) 계약체결 후, 측정대행업무 수행

2. 계약관련 제출 서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필수 제출서류 1. 측정대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 서식)2. 과업수행계획서(업무의 대상 및 범위, 준수사항)
- 선택 제출서류 :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업지시서, 자체 계약서류 등 (산출내역서 등 가격 결정에 관련된 서류 제외)
 -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등 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 ※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대조가 필요한 경우
 - ※ 변경계약으로 원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

3. 과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형식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준수사항은 반드시 포함
 - 대상 및 범위 : 측정 대상시설, 측정항목, 횟수 등 과업의 전체 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준수사항: 발주처와 측정대행업체 상호 간 조율된 준수사항 포함
 - ※ 단순 견적서는 과업계획서로 인정(x), 영문발주서 인정(x)
- [참고] 과업계획서 샘플 양식 ECOLAB 게시판 업로드 예정

4. 표준계약서 등 서류 제출 시기는 언제이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 **측정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 (발주처와 측정대행업체 간 사전협의 후)
 - 계약 당사자 상호간 서명 없이 제출해도 무방
 - ※ 서류 제출기한: 계약일 이전(0) / 계약일 10일 이전(X)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가능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ECOLAB 통해 제출 요망)
 - ECOLAB 제출시 현장스케줄, 시험결과 입력 등 이후 단계 진행 가능
 - ECOLAB 활용 정도에 따라 향후 용역이행능력평가 시 가점 부여

5. 법정의무 측정이 아닌 자체 관리 목적의 단발성 계약의 경우도 제출대상에 해당되나요?

- 법정의무측정용, 자체성능확인용, 연구목적 등 측정의 목적과 무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2종 사업장(대기,수질)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 대상
- 또한, 단발성 계약의 경우도 표준계약서 제출 대상에 해당

6. 대기 1종 사업장인 A사와 측정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측정하려는 배출시설 중에 4,5종 굴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4,5종 굴뚝은 제외하고 1,2종 굴뚝만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표준계약서 제출 대상의 판단 기준

: 사업장 종 별 (O) / 배출시설(굴뚝) 종 별 (X)

- 7. A업체 본사는 a,b,c 지역별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지역사업장 전체에 대해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사업장에 1, 2, 3종 사업장이 혼재해 있다면 1, 2종 사업장과 3종 사업장을 분리하여 표준계약서를 따로 작성, 제출해야 하나요?
 - 3, 4, 5종 사업장은 표준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 1, 2종 사업장과의 계약서, 과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함께 제출해도 무방(분리 작성·제출도 가능)
 - 다만, 각 a, b, c 사업장 별 과업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

- 8. 자동 계약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번 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표준계약서 제출 대상에 해당
 - 제출시기 : 과업기간 종료 후 갱신되는 시점
 - ※ 자동 갱신 계약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계약관리 사각지대 발생

- 9. 기제출한 계약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변경계약의 경우도 제출 대상에 해당
 - 다만 이 경우 "ECOLAB" 에서 기제출한 계약번호를 조회 후 연계하여 이 계약이 신규계약이 아닌 변경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0.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정확한 계약금액을 알 수 없으며, 측정항목별 단가만 정하고 윌별 수행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표준계약서와 과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예상되는 과업의 내용, 범위를 토대로 기본단가 산정하므로계약 당사자 간 협의된 기초금액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 과업계획과 실제 수행실적 간 차이는 과업 종료 후 실적 확정하는 절차 추가 등 합리적 방안 마련 중(ECOLAB 통해 추후 공지)

- 11. 대부분의 측정대행은 시설 가동 유무 등 발주처 상황에 따라 계약 이후에도 측정대상, 항목, 횟수 증감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최초 제출한 계약서 내용과 수행 실적 간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 발주처 요구 및 상황변화에 따라 최초 제출한 계약내용과 계약 종료 후 정산하는 금액, 실적 간 차이 발생
 - 현재 ECOLAB에서 측정시설 및 항목 추가 수정가능, 삭제는 불가

- 12. 다수의 측정대행업체가 하나의 배출사업자와 공동수급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수급계약 참여업체 중 대표업체만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공동수급계약에 참여한 모든 측정대행업체는 전체 과업범위 중자신이 계약한 과업범위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및 과업계획서 제출
 - 대행업체 간 과업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

13. 자체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제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조달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일자 이전에 제출
-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미리 준비

14. 배출사업자 A가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B업체에 위탁한 경우 표준계약서의 발주처는 누구인가요?

- 위탁운영사인 B업체와 표준계약서 작성
 - 세금계산서 청구 등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주체
- 다만, 측정시설명은 A사업자 인허가증에 명시된 시설로 입력
 - ※ 발주처가 실 소유주인지 위탁 운영사인지 체크하는 기능 추가 예정

15.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시험검사법 제33조)
 - (행정처분) 경고(1차), 영업정지(2, 3차), 등록취소(4차) (시행규칙 별표10)
- 관련 서류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주요 사업일정

1월~2월

- ◆ 측정대행업 종사자 교육훈련 계획 수립(확정 후 게시)
- ✔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위한 서류제출(~ 2월 마감)

3월~6월

- ✔ 용역이행능력평가 검토위원회 구성(3월)
- ✔ 용역이행능력평가 평가수행 검토(4~6월) 및 공고(6월)

7월 이후

- ✔ 측정대행업 종사자 교육훈련
- ◆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이해관계자 연찬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